

# 천안(정) 천안계통 비상연계관로 신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수행기관 지정공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, 동법 시행령 제100조, 제100조의2,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」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기관 지정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
1. **공고명** : 천안(정) 천안계통 비상연계관로 신설공사 정기안전점검기관 지정공고

## 2. 안전점검 개요

- 가. 점검건명 : 천안(정) 천안계통 비상연계관로 신설공사
- 나. 점검대상 :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 참조 (붙임1)
- 다. 점검비용 : 금 968,000원(VAT 포함)

## 3. 공사개요

- 가. 공 사 명 : 천안(정) 천안계통 비상연계관로 신설공사
- 나. 공사개요 : 관로신설(L=128m, DCIP, D400mm)
- 다. 공사현장 : 충남 천안시 청당동 일원
- 라. 공사금액 : ₩ 983,300,000원 (VAT 포함)
- 마. 공사기간 : 2025. 12. 23. ~ 2026. 06. 20. (180일간)
  - \*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90일 계약연장 예정
- 바. 발 주 자 : 한국수자원공사
- 사. 시 공 사 : 주식회사 대현종합건설(100%)

## 4. 참가자격

- K-water 등록 안전점검 수행기관 230개 社
- \*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(kwater.or.kr 게시판, 2025.12.31.기준)

5. **공동계약에 관한 사항** : 해당없음

6. **입찰참가 및 가격입찰** : 2026 02. 13.(금) 09:00 ~ 2026 02. 20.(금) 18:00

- 가. 제출서류 : 안전점검기관 지정요청서 1부 (붙임2)
- 나. 제출장소

(우편)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로 301-96 K-water 천안권지사 시설관리과  
(이메일) sang9395@kwater.or.kr

※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☎041-629-4252(담당 : 상희준 대리)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
7. **개찰일시 및 장소** : 2026. 02. 23.(월) 14:00, K-water 천안권지사 상황실

## 8.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및 장소

가. 제출기한 : 2026. 02. 24.(화) ~ 2026. 03. 03.(화)

나. 제출장소 :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로 301-96 K-water 천안권지사 시설관리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택배접수

(우선 평가를 위해 이메일 우선 접수, sang9395@kwater.or.kr,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.)

라. 제출서류

1)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

2)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부

3) 최근 5년내 유사용역이행실적 1부 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1식

마. 개찰 후 최저가격 제시한 1개 업체에 서류제출 통보(2순위 이상은 업무 간소화를 위해 통보 임시 보류)하며, 1순위 예상 업체는 우선 평가를 위해 개찰 통보일시로부터 만3일(영업일 기준) 내 위의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우선 제출하며,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는 서류제출 마감기한 전까지 적격 검토 및 회신

바. 예상 1순위 업체가 적격일 경우 해당 업체를 점검기관으로 지정하며, 부적격일 경우 차순위 업체에 서류제출 통보하며, 해당 업체는 다음 7일 내 위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

## 9. 안전점검기관 지정방법

가. 한국수자원공사 「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기준」 적용

나.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(낙찰하한율(84.995%) 이상)을 제시한 업체순으로 사업수행능력과 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**85점 이상**을 지정예정자로 선정합니다.

다. 적격심사 순위에 따라 수행능력평가를 하기위해 해당업체에 서류제출 요청시 7일 이내에 자기평가서, 사업수행능력평가서(증빙서류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라.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.5%이상 102.5%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,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인 경우는 결사합니다.

## 10. 기타사항

가.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낙찰자로 결정된 후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등록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나.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.

다. 점검횟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15%내외의 증·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라. 안전점검기관 지정결과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※ '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(<http://www.kwater.or.kr>)-새소식-공지사항'에서 확인

마. 계약 즉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바. 본 과업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천안권지사 담당자 상희준 대리, ☎ 041-629-4252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02월 13일

한국수자원공사 천안권지사

[붙임[붙임1] 세부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

구분	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	시설물 구분	공사 내용	점검 차수
영 98조제1항	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	상수도		정기 2회 초기 1회
	지하10m이상 굴착공사			
	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			
	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			
	10층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			
	천공기(높이 10m이상)			
	항타 및 항발기			
	타워크레인			
영 제101조의2제1항	높이가 31미터 이상비계			
	브라켓 비계			
	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			
	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	가설 구조물	관로 공사	정기2회
	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			
	높이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			
	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·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			
총횟수				정기4회 초기1회

\*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따라 점검차수는 최소2회 이상 실시

